

제 266 회 정 례 회
2007. 12. 2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강태원 의원 외 7인

(강태원, 이종호, 민경환, 이대원, 오용식, 이언구, 박영웅, 임 현)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 / 2007년 12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(2007년 12월 14일)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토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회의록 작성·발간의 필요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)
-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함(안 제52조)
-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함(안 제53조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회의록의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시 전자임시회의록인 의정시스템

게재사항을 추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현실에 맞게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하며 회의록 작성과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록매체의 다양성을 현실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07년 12월 4일
발의자: 강태원, 이종호, 민경환,
이대원, 오용식, 이연구,
박영웅, 임현

1. 제안이유

-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회의록 중 전자속기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록 작성·발간의 필요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)
-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함(안 제52조)
-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함(안 제53조)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

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회의록 작성·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을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제53조제1항 중 “그러나”를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(생략) <u>②발언자의 발언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③(신설)</p> <p>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<u>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<u>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④(생략) <u>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기 인쇄된 부수내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(생략) <u>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</u> <u>③회의록 작성·발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<u>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입시회의록을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3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…… …… … 다만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 ……</p> <p>②~④(생략) <u>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일반에게 배포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